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정 2011.10.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등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부·처·청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에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연구보안심의위원회

제4조(연구보안심의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종합연구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1.4>

③ 보안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안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 3 장 보안등급 분류

제5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이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가.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나.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라.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개발과제

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사.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아. 연구결과물이 대학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될 경우 대학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I·II·III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I·II·III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 및 [별지 제2호] “보안등급 분류 신청서”를 주관연구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주관연구기관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본교 보안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 4 장 보안사고 처리

제8조(연구수행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①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연구기관별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 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의 보안서약서를 주관연구기관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면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주관연구기관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시건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 참여 제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별지 제4호]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여야 하며, 특이한 동향을 인지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보안사고의 보고)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3-3-15-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주관연구기관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은 물론 기간 종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6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

번호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한 4가지 산업기술 추가 요건		
6-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6-2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6-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6-4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① 상기 분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및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② 보안 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합니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및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종 점검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조사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보안등급 분류 신청서

- ☐ 연구책임자
- 소 속 :

○ 직명(직위) :

○ 성 명 :

○ 연구과제명(신청, 수행) :

- 지 원 기 관 :

- 지원사업명 :

○ 보안등급 분류 사항(제5조에 의한 보안 등급 기재)

구 분	보안과제	일반과제	비 고
연구책임자 분류			1차 분류
심의회 의결			심의 검토

20 . . .

연구과제책임자 :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보안서약서

- 소속(대학, 학과) :
- 직명(직위·급, 학년) :
- 성명 :
- 연구과제명 :

상기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경우 동 과제 참여 제한 및 타 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책임자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도 같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관련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6.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7.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8. 연구책임자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물의 반출·대외제공·공개하지 않는다.
9. 연구과제 사항은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다.
10. 외국인을 접촉할 시 현황을 신고하여 관리부에 기록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11. 연구책임자의 출입제한 구역 및 주요 연구자료의 접근 제한 규정을 준수한다.

20 . . .

서약자 성명 :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참여연구원)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참여 연구원				접촉사유 및 상대자	책임자 (서명)
성명	접촉일시	장소	방법		
				- 접촉사유 : - 상대자 • 국 적 : • 성 명 : • 연락처 :	
				- 접촉사유 : - 상대자 • 국 적 : • 성 명 : • 연락처 :	
				- 접촉사유 : - 상대자 • 국 적 : • 성 명 : • 연락처 :	